

202.45호

행정 명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 본인은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행정명령 202.34호 및 202.35호에 포함된 모든 지침을 해당 지침이 후속 지침으로 대체되지 않은 한 이로써 연장합니다. 또한, 이로써 다음 법률을 본 행정명령일부터 2020년 7월 26일 일요일까지 일시 정지 또는 개정합니다.

- 노동부 커미셔너가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서 허가되었고 2020년 3월 9일의 수당 주 시작부터 발생한 경험 요율 부담금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발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범위까지, 노동법(Labor Law) 제581항의 세부조항 1 하부절 (e)
- 2020년 법률 25장 제1항의 세부조항 4,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가 2단계 또는 3단계 여행 경보를 내린 국가로의 여행 외에도, 해당 직원이 자발적으로 2020년 6월 25일 이후 여행을 시작해 7일 연속 평균으로 평균 주민 10만 명당 10명의 양성 검사율보다 높거나 양성 검사율이 10%보다 높으며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커미셔너가 행정명령 205호에 따라 발행된 권고에 개략된 조건을 만족한다고 지정한 주로 여행하고 해당 여행이 근로자의 근무의 일부이거나 고용주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근로자는 본 장에 따라 유급 병가 수당 또는 모든 기타 유급 수당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공하기 위한 범위까지 개정.
- 버펄로스 현장 제28-66장, 시장이 2020년 4월, 5월 및 6월 동안 미납한 2019-2020년 시 세금에 규정된 가산세를 면제하고 2020년 6월 30일 이후에 생성된 2019-2020년 시 세금의 납부를 2020년 4월, 5월, 6월에 대해 가산세 없이 생성하도록 허가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또한, 부동산세법(Real Property Tax Law) 제925-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주 재난 비상사태 시 영향을 받은 카운티, 도시, 타운, 빌리지, 교육구 최고경영자의 요청에 따라 이자 또는 벌금 없이 재산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이로써 본인은 연장을 신청한 지불 기일이 된 다음 지방단체의 재산세 납부 기한을 이자 또는 벌금 없이 21일간 연장합니다.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 오시닝 빌리지, 록랜드 카운티 포모나 빌리지.

또한, 행정부법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 이번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7월 26일 일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시를 발행합니다.

- 비필수 모임을 제한한 행정명령 202.10호의 지시를 개정한 행정명령 202.38호 및 행정명령 202.42호에 의해 연장 및 개정된 행정명령 202.35호의 지침은 이에 따라 모임의 위치가 주의 재개 4단계에 도달한 지역에 있고 보건부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안면 가리개와 청소 및 방역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경우 50명 이하의 인원이 어떠한 합법적인 목적 또는 이유로 모이는 것을 이러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이 특정 실내 구역 수용량의 50%를 넘지 않는 한 허가하도록 개정됩니다.
- 행정명령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10, 202.11, 202.13, 202.14, 202.28, 202.31, 202.34의 조항을 연장한 행정명령 202.41과 202.35호가 각 공공 또는 민간 기업 또는 공공 숙박 시설의 장소를 폐쇄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은 향후 행정명령에 의해 수정되거나 연장되지 않는 한 이로써 계속됩니다. 그러나 다음 내용이 적용됩니다.
 - 2020년 6월 26일 금요일에 발효되는 비필수 사업체 또는 기타 단체의 대면 인력에 대한 감소 및 제한은 보건부의 결정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적격 지역의 4단계 산업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등 교육.
 - 영화 및 음악 제작.
 - 저위험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 저위험 실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 팬이 없이 열리는 프로 스포츠.
 - 4단계에 따라 개장한 기업 및 산업 단체는 반드시 보건부 지침을 준수하며 운영해야 합니다.
 - 2020년 6월 26일 금요일부터 4단계 재개에 필요한 공중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센트럴 뉴욕, 모호크 밸리, 서던 티어, 노스 컨트리. 해당 날짜 이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추가 지역은 추가 수정 없이 본 행정명령에 통합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동일한 약관에 따라 4단계 산업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2단계, 3단계 또는 4단계에서 열 수 있는 산업, 사업체 또는 시설의 운영을 제한한 이전 지침은 사업체, 산업 및 시설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모든 행정명령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로써 대체됩니다.
- 대기 수술에 관한 행정명령 202.44호에 포함된 지침은 이로써 개정되어, 모든 일반 병원, 외래 수술 센터, 진료실 기반 수술 관행 및 진단 및 치료 센터에 모든 대기 수술 및 절차를 취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의 수를 늘리도록 지시하는 권한을 보건부 커미셔너에게 부여하는 행정명령 202.10호에 포함된 지침은 이로써 수립된 기준이 현재 충족되는 한 기준이 해당 지침에서 발표된 일자에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병원이 대기 수술 및 절차를 시행할 권한을 부여하도록 수정되며, 6월 14일 보건부 지침으로 수정된 바에 따릅니다.
- 주 전역의 학교 폐쇄와 관련된 행정명령 202.28호, 202.18호, 202.14호 및 202.4호에 포함되었으며 행정명령 202.11호에 따라 개정된 지시는 행정명령 202.34호를 연장하였으며, 이로써 특별 교육 서비스 조항의 목적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 대면 교육 폐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유지됩니다. 교육구는 필수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식사 제공, 보육에 대한 계획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교육구는 모든 어린이가 무료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대체 단체가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대체 단체를 통해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교육구에서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